#34. 개인정보 수집 동의

안녕하세요. 변승규 변호사입니다.

과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2023 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의해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**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** 살펴보겠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, A 사의 케이스

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이용자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소, 전화번호, 결제정보 등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합니다.

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,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.

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의 3(온라인 특례)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, 다만,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·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.

즉, **과거에는 A 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고,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의 3 이 적용되었습니다**.

또한, A 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만 아니라, 이용자로부터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 A 사가 이용자로부터 주소, 전화번호, 결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지 않으므로, A 사는 이에 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.

이처럼 과거에는 비록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자와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소, 전화번호, 결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도 A 사가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므로, A 사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, 이용자는 그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
하지만 2023 년 3 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절차의 범위가 확대되며 동의 절차를 축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 사의 사례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, B 사의 케이스

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 사는 A 사와 같이,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이용자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소, 전화번호, 결제정보 등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합니다.

A 사의 사례와 달리,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, ②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.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의 3(온라인 특례)은 삭제되었습니다.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이 적용됩니다.

또한,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“불가피하게”라는 문구가 삭제되어서,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.

개정 전	개정 후
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	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B 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B 사 및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한 동의 절차 없이도 B 사는 이용자의 주소, 전화번호, 결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. 그러나 아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
불필요한 이용자 동의 절차는 조속히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다만, **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므로**,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서 **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**입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5 SEUM Law.

변승규 변호사

Partner

seungkyu.byeon@seumlaw.com